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821 호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5년 월 일<br>(제 423 회) |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 
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청북도교육감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5년 1월 10일 |

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2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1. 1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개정 이유

-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기관의 등급 조정(4개 기관)

| 등급  |   | 시·군 | 위치  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|
|---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변경전 | 다 | 제천시 |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    |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|
| 변경후 | 나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변경전 | 라 | 청주시 |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|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   |
| 변경후 | 다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변경전 | 라 | 제천시 |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  | 한송초등학교         |
| 변경후 | 다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변경전 | 라 | 제천시 |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  | 한송중학교          |
| 변경후 | 다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)
- 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- 2) 입법예고: 2024. 12. 6. ~ 2024. 12. 26., 제출의견 없음
  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 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 
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특수지급무수당(도서벽지수당)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(제2조 관련)

□ 벽지

| 등급 | 시·군 | 위치  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  | 영동군 | 상촌면 물한4길 8        | 충청북도학생수련원     |
| 나  | 제천시 |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    | 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분원 |
| 다  | 청주시 |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01 |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  |
|    | 제천시 |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  | 한송초등학교        |
|    |     |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   | 한송중학교         |
|    | 단양군 |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    |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  |
| 라  | 청주시 |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|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 |
|    | 충주시 |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   |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  |
|    | 제천시 | 백운면 화당로 33        | 화당초등학교        |
|    | 보은군 | 마로면 세중1길 2        | 세중초등학교        |
|    |     | 회남면 회남로 1901-1    | 회남초등학교        |
|    | 옥천군 | 군북면 방아실길 3-2      |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  |
|    |     | 동이면 우산로2길 23      |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  |
|    | 영동군 |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     | 용화초등학교        |
|    | 진천군 | 문백면 농다리로 536-41   | 충청북도학생수련원     |
|    |     | 문백면 농다리로 536-45   | 은여울중학교        |
|    |     | 문백면 농다리로 536-45   | 은여울고등학교       |
|    | 괴산군 |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    | 장연초등학교        |
|    |     | 청천면 송면2길 13       | 송면초등학교        |
|    |     | 청천면 문장로 2915      | 송면중학교         |
|    | 단양군 | 가곡면 대대길 51        |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  |
|    |     |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    | 어상천초등학교       |
|    |     |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    |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   |
|    |     | 영춘면 온달평강로 63-6    | 영춘초등학교        |
|    |     |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    | 영춘중학교         |
|    |     |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     | 단양소백산중학교      |
|    |     | 적성면 적성로 453       | 대가초등학교        |



## 관 계 법 령

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4. 8. 14.] [대통령령 제34825호, 2024. 8. 13., 타법개정]

제12조(특수지근무수당)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·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(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)을 지급한다. 다만, 경찰대학생·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·소방간부후보생·사관생도·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 3. 31., 2016. 11. 29., 2024. 8. 13.>

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.

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,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, 국립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,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·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과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·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(이하 “시·도소방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조례로,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,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

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,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3. 10., 2024. 8. 13.>

-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## 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24. 7. 1.] [대통령령 제 34619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

제12조(특수지근무수당)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·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, 갑지는 월 5만원, 을지는 월 4만원,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,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85. 9. 9., 1993. 1. 15., 1995. 1. 28., 2000. 1. 28., 2001. 1. 29., 2004. 5. 4., 2005. 1. 7., 2012. 1. 6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9. 1. 8.>

-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,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 <개정 1985. 9. 9.,

1998. 6. 1., 2000. 1. 28., 2008. 2. 29., 2008. 9. 10., 2021. 11. 30.>

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7 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85. 9. 9., 1991. 1. 28., 1991. 6. 27., 2001. 1. 29., 2005. 1. 7., 2008. 2. 29., 2008. 9. 10.>

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·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. <신설 1999. 1. 21., 2001. 1. 29., 2008. 2. 29., 2008. 9. 10.>

□ **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**[시행 2013.3.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

제5조(도서·벽지수당) 국가는 도서·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·벽지의 급지별(級地別)로 도서·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**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**[시행 2021. 4. 13.] [교육부령 제236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]

제2조 (도서·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)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·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.[전문개정 1985.12.31.]